#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5. 9. 30 조례 제2109호
일부개정 2016. 9. 26 조례 제2195호(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7. 6. 20 조례 제2264호(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9. 8. 2 조례 제2508호(조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21. 9. 28 조례 제2782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를 문화·예술적 가치와 관광을 융합하는 창조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시민들을 위한 문화시설로 조성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업사이클아트센터(Up-cycle Art Center)”란 버려지는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디자인을 가미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고, 전시·교육·공연 및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는 예술 공간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로 하고, 위치는 광명시 가학로85번길 142 자원회수시설 내에 둔다.

제4조(기능)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및 부속시설(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센터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작가 공간 운영 및 관리
3. 재활용품 등을 활용한 상품 개발·판매 및 홍보
4. 센터 관리 및 운영
5. 센터 내·외의 장소 등에 설치되어 있는 전시물 등에 대한 관리
6. 그 밖에 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 제2장 운영관리

제5조(운영) 센터는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하며 필요한 조직,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명도시공사 등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
2. 설날과 추석날
3.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홈페이지나 사용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프로그램의 운영) ① 센터에서는 센터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자, 다양한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에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수강료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재료비는 수강생이 별도로 부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종류와 수강료 등은 시 홈페이지 등에 사전 게시하여야 하며, 수강료 등의 징수 및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수강신청) 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센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강사 및 강사료) ① 센터에서는 센터의 운영프로그램을 담당할 우수강사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강사료의 지급기준은 강사수준, 강좌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 제3장 관람 및 시설의 이용

제10조(관람·이용시간)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나 사용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11조(관람료) ① 센터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1. 센터에서 전시물 등을 유료로 대여 받아 기획전시하거나 순회 전시하는 경우
2. 제13조에 따라 센터시설의 대관허가를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가 전시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관람료는 시장이 정하여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는 전시 등을 하는 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관람료는 광명시민에 한해 50퍼센트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무료관람 등)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서 센터에서 전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9. 26, 2019. 8. 2, 2021. 9. 28〉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훈 관계 법령 등에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규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4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한 경우, 일반 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시설이용자로 하여금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사용허가)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② 센터 사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센터 사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변경) 허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사용허가 순서) 센터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허가 신청 접수순으로 한다.

제16조(사용료) ① 센터시설의 사용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사정으로 사용 등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 등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 등이 본인의 의사로 시설이용을 취소한 경우

제17조(사용료 면제)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 2021. 9. 28〉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 등이 주관하는 행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그 가족
3. 보훈 관계 법령 등에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규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단, 국가가 지정한 보훈 단체에 한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4.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구성원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 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사용료의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의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9조(변상) 사용자 또는 관람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
2. 그 밖에 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26 조례 제2195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20 조례 제2264호,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광명시시설관리공단”을 “광명도시공사”로 한다.

⑨ 생략

부칙 〈2019. 8. 2 조례 제2508호, 조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은 2019. 7. 1.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 9. 28 조례 제2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업사이클아트센터 수강료 등의 징수 및 반환기준

1. 프로그램 수강료 등 징수기준

| 구 분 | 기 준 | 수강료 | 비 고 |
|---|---|---|---|
| 정기강좌 | 1인/1개월 | 40,000원 이내 | |
| 체험활동 | 1인/1회/1종 | 10,000원 이내 | |

2. 수강료 반환기준

| 구 분 | 환불사유(환불 신청일) | | 환불기준 | 비고 |
|---|---|---|---|---|
| 프로그램 수 강 료 | 운영자 귀책사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 | 100퍼센트 | |
| | 수강자 귀책 사유 | | | |
| |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강 개시 전날까지 | 100퍼센트 | |
| | | 수강기간의 1/3 경과 전 (잔여일수 20일 이상인 경우) | 70퍼센트 | |
| | | 수강기간의 1/2 경과 전 (잔여일수 15일 이상인 경우) | 50퍼센트 | |
| | | 수강기간 1/2 경과 후 (잔여일수 15일 미만인 경우) | 환불하지 아니함 | |
| | 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강 개시 전날까지 | 100퍼센트 | |
| | | 수강 개시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 | |

〔별표 2〕

# 업사이클아트센터 시설 사용료 징수 및 반환기준

1.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구 분 | 기 준 | 사 용 료 | | 비 고 |
|---|---|---|---|---|
| | | 평일 | 공휴일 | |
| 전시장 | 1일 | 50,000 | 70,000 | |
| 공연장 | 1회/2시간 | 20,000 | 30,000 | |
| 가변형 교육실(1층) | 1회/2시간 | 10,000 | 20,000 | |
| 회의실 및 강의실 | 1회/2시간 | 10,000 | 10,000 | |

※ 비고

1. 공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을 말한다.
2.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 철수를 위한 이용 시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함)
3. 추가요금
   - 회의실 및 강의실 등 :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 전시장 :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 공연장 대관
     - 평 일 :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산정한다)
     - 공휴일 :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15,000원(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산정한다)

2.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 원)

| 구 분 | | 기 준 | 사용료 | 비 고 |
|---|---|---|---|---|
| 음 향 | 유선마이크 | 1회/2개 | 5,000 | 추가 시 개당 2,000원 |
| | 무선마이크 | 1회/2개 | 5,000 | 추가 시 개당 2,000원 |
| 조 명 | 특수조명 | 1회 | 20,000 | 추가 시 시간당 5,000원<br>롱핀, 레이저, 대파 등 |
| | 일반조명 | 1회 | 10,000 | 추가 시 시간당 5,000원 |
| 영 사 | 빔프로젝트 | 1회 | 5,000 | |
| 냉・난방비 | 냉방 | 1회/4시간 | 20,000 | 추가 시 시간당 10,000원 |
| | 난방 | 1회/4시간 | 20,000 | 추가 시 시간당 10,000원 |

※ 비고

1.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이용 시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2.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준시간 초과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산정한다.
3. 그 밖에 장비(음향, 방송, 조명 등)의 이용 및 냉・난방비 사용 상황에 따라 추가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따로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

3. 사용료 반환기준

| 구 분 | 환불사유(환불 신청일) | 환불기준 | 비고 |
|---|---|---|---|
| 시 설 사용료 | 운영자 귀책사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 100퍼센트 | |
| | 사용 개시 10일 전까지 | 100퍼센트 | |
| | 사용 개시 5일 전까지 | 80퍼센트 | |
| | 사용 개시 3일 전까지 | 70퍼센트 | |
| | 사용 개시 1일 전까지 | 50퍼센트 | |

〔별지 제1호〕

# 업사이클아트센터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 | | | | | |
|---|---|---|---|---|---|
| 신청인 | 단 체 명 | | | 대표자명 | |
| | 주 소 | | | | |
| | 성 명 (신 청 인) | | | 생년월일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연 락 처 | 유선번호 | | 이동전화 | |
| | | FAX | | e-mail | |
| 대관신청사항 | 공연(행사)명 | | | | |
| | 사용 시설명 | | | | |
| | 사용 목적 | | | | |
| | 대 관 일 자 | | | | |
| | 준비대관 |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 | | 오전( ), 오후( )<br>야간( ), 철야( ) |
| | 공연대관 |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 | | |
| | 철수대관 |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 | | |
| | 관람예상 인 원 | | | | |
| | 공연(행사) 주요 내용 | ※ 첨부 : 공연 / 행사계획서 | | | |

위와 같이 업사이클아트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사용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광명시장(수탁자)** 귀하

〔별지 제2호〕

# 업사이클아트센터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table>
<tr><td rowspan="2">사용자</td><td>단 체 명</td><td colspan="2"></td><td>대표자명</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12">대관사항</td><td>공연(행사)명</td><td colspan="4"></td></tr>
<tr><td>사용시설명</td><td colspan="4"></td></tr>
<tr><td>사용 목적</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5">대 관 일 자</td></tr>
<tr><td>준비대관</td><td colspan="3">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td><td>오전( ), 오후( )<br>야간( ), 철야( )</td></tr>
<tr><td>공연대관</td><td colspan="3">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td><td></td></tr>
<tr><td>철수대관</td><td colspan="3">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td><td></td></tr>
<tr><td>관람예상<br>인 원</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사 용 료</td><td>사 용 요 금</td><td colspan="3"></td></tr>
<tr><td>사용료 내역</td><td colspan="3"></td></tr>
</table>

**허 가 조 건**

1. 「광명업사이클운영및설치 조례」 및 그 밖의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업사이클아트센터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4. 공연장 내에서는 음주 및 담배를 피우지 못하며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5. 홍보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 사용자가 설치하였거나 부착한 각종 시설물과 홍보물 등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 및 제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영자가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7. 행사 중 발생된 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사용자가 수거·처리하여야 합니다.
8.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자동 취소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업사이클아트센터 시설에 대하여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장(수탁자) (인)**

〔별지 제3호〕

# 업사이클아트센터 사용료 면제신청서

| | | | | |
|---|---|---|---|---|
| 신 청 인 | 주 소 | | | |
| | 성 명 | | 전 화 번 호 | |
| | 단 체 명 | | | |
| 사 용 구 분 | | | | |
| 사 용 목 적 | | | | |
| 사용면제서류 | | | | |
| 면제의 종류 | | | | |
| 사 용 기 간 | | | | |
| 기 타 | | | | |
| 첨 부 | 행사목적을 명기한 행사(공연)계획서 1부. | | | |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광명시장(수탁자) 귀하